IT8 의로 u-KOREA 실현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책홍보관리실(750-2810) www.mic.go.kr 정보통신부 Ⅲ0℃

2006. 1. 18.(수) 배포

문의 / 기술정책팀장 류수근 (750-2320)

이준희 사무관 (750-2325) info0913@mic.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한·중 IT자격 상호인정 협정(MOU) 체결

- '05년말 기준 29만4천명의 정보처리기사 등 한국 자격증으로 중국의 해당분야에 취업 가능 -
- □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과 중국 정보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자교육센터(법인대표 서옥빈)는 1월 19일 중국 북경의 전자교육센터에서 한・중 양국간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 o 양국가가 상호 인정한 IT자격증은 한국의 '정보처리기사'와 중국의 '소프트웨어설계기사', 한국의 '정보처리산업기사'와 중국의 '프로그래머'이다.
- □ 「IT기술인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도」는 직무분야, 자격요건, 시험절차 등이 동등한 IT기술자격증을 국가간 상호 인정키로 협정(MOU) 체결하고 상호인정 IT자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증명 없이 협정 국가 내에서 한국의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 □ 이번 협정서에는 ▲IT분야 자격종목의 상호 동등성 인정, ▲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상호인정의 지속적

유지 및 교류촉진을 위한 정기적 협의 실시, ▲상호인정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 한・일본의 사례와 같이 취업비자 신청시 학・경력 증명 면제 등일부 제도를 개선하면 한・중간의 IT기술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젊은 IT기술 인력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국내 IT인력을 중국현지에서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o 이번에 상호 인정키로 한 IT자격 취득자의 2005년말 현황은 한국의 정보처리기사 294,369명, 정보처리산업기사 195,700명이며 중국의 자격취득자는 소프트웨어설계기사 64,502명, 프로그래머 89,224명 으로 파악되었다.
- □ 정부는 2001년 12월 「한・일 IT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IT자격 소지자 약 300명이 일본에 취업한 반면 일본 IT자격자가 우리나라에 취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일본, 중국 외에 IT 강국인 인도 등 기타 국가와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

부정신고센터







순 번	대상국가	인정범위		체결일자	유사 직무분야
		국내자격	외국자격	MEEN	11.4 -11 6-1
1	일본	정보처리기사	응용정보기술자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11. 1월	IP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본정보기술자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2	중국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어설계기사 (Software development Engineer)	'06. 1월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 (China Education Center of Bectronic Information Application)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머 (Programer)		
3	베트남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아개발기사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Engineer)	'08. 8월	VITEC (Vietnam Training and Examination Center)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본정보기술자 (Fundamental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		
4	호주	기술사 등급 → 수험자가 취득한 미국(텍사스주), 호주 기술사와 동일분야의 국가		'15. 5월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
5	미국 (텍사스)	기술자격 기술사 종목 응시자격	*	16.3월	Texas Board of Professional Engineers

외국 자격,학력(경력)취득자의 응시자격서류제출 안내





